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박지혜·위성곤·이개호

조인철 • 박해철 • 박정현

강준현 · 정일영 · 김성환

정진욱 · 오세희 · 박수현

허 영·김용만·정준호

김 현 • 이재관 • 이용우

문대림 • 이재강 • 황명선

이광희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

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수도요금 지원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 금의 지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	
<u>다.</u>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
	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
	금 지원
<u>6</u> . (생 략)	<u>7</u> . (현행 제6호와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3. (생 략)	1. ~ 17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의4.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u>및</u>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18. ~ 25. (생 략)

② ~ ④ (생 략)

수도요금의 지원

18. ~ 2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